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7. 26 선고 2024가단87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5.

판 결 선 고 2024. 7. 26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최종원

별지